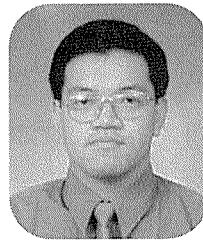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MRA) 체결동향 및 대응방안



김화영 사무관(정보통신부 산업기술과)

I. 들어가는 말

이미 각 업체에서 잘 알고 있듯이, 최근 국제적으로 WTO 출범과 더불어 통신시장이 단일화·개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무역질서 및 통신시장은 동일한 무역환경 속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간의 국제경쟁력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이의 한 방면으로 무역 관세장벽이 견히고 새로이 기술장벽을 없애기 위한 논의가 APEC을 비롯하여 EU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간 형식승인 상호인정(MRA)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국가간 형식승인상호인정이란 무엇이고, 현재의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간 형식승인 상호인정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응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APEC 및 EU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 상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국가간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MRA)의 의의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안전, 보건, 환경,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를 약정체약국간에 상호인정하기 위한 약정”을 말한다.

이는 약정체결시 체약국의 시험평가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s), 인증서(certificates), 마크(marks)를 상호인정하고 이중적인 시험검사, 인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

즉, MRA는 “한번시험·인증되면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짐”(one approved, accepted everywhere)의 원칙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표준(기술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승인한 제품은 수입국의 추가적 요건 없이도 수입국 또는 그 외의 국가에서도 거래되고 사용되는 것이다.



III. 상호인정약정의 단계

현재 APEC 및 EU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호인정은 크게 시험성적서 상호인정과 형식승인서 상호인정 등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정시험기관 및 시험성적서(Test Report) 상호인정단계

이 단계는 형식승인서를 상호인정의 전단계로서 약정체결국간의 기술규정에 의하여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상호지정하고, 지정된 시험기관은 상대국의 통신관련 기술규정(기준)에 적합하게 통신기를 시험하게 된다.

시험평가기관의 시험결과를 상대국의 인증기관에 보내면 이 인증기관에서 검토후 승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인정에 있어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시험기관을 직접 상호지정하는 것으로써, '97년 1월 10일 우리나라와 캐나다간에 체결된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MRA)의 경우와 같이 양국간에 시험기관을 각국의 지정조건에 맞게 지정(우리나라는 캐나다 시험기관을, 캐나다는 우리나라 시험기관을 직접 지정)하고, 그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각국의 기술규정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를 우리나라의 전파연구소 또는 캐나다 형식승인 기관인 산업부에 보내면 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서를 발행받는 절차를 갖게 된다.

일종의 우리나라의 지정시험기관이 캐나다에 하나 더 있다고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APEC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식으로서 수출국내의 시험기관을 수출국의 지정기관(우리나라는 전파연구소)이 지정하고, 수출국의 지정시험기관 리스트를 APEC회원국에 통보하면 MRA체결 상대국(수입국)이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험기관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지정시험기관 및 형식승인서를 상호인정 단계

이는 첫 번째 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한 단계로서 각국이 상대국이 지정한 시험기관을 상호지정하고, 그 시험기관을 통하여 시험한 결과를 자국의 시험기관에서 인증서를 발부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시험기관지정은 위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단계와 동일하다.

이로 인해 각국의 제조업체 또는 수출(입)관련업체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수출(입)절차가 그만큼 간소화되는 것이다.

IV. 국제적인 MRA동향

1. APEC 동향

'9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18개 APEC 회원국 장관들이 여섯차례의 APEC MRA Task Force Meeting을 거쳐 마련한 전기통신기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MRA) 최종(안)을 승인하고 '99년 7월 1일부터 MRA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장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승인된 MRA (안)이 APEC의 전기통신기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하는 기본(안)이 되며, 각 회원국은 이 기본(안)을 바탕으로 다자간 또는 양자간에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APEC MRA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며, 참여시기는 APEC TEL WG(APEC 전기통신 실무그룹)에 통보하면 된다.

’99년 3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19차 APEC TEL회의에서 ’99년 7월 1일부터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에 참여키로 한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등 8개국이다.

중국은 2002년부터 N/W 단말장치에 관하여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승인서 상호인정에 참여가 예상되는 회원국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과 마찬가지로 8개국 정도이며, 시행은 200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99년 9월 폐루에서 개최예정인 제20차 APEC TEL회의에서는 정보통신기기분야의 형식승인서 상호인정시행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상호인정에 관련된 대상기기에는 각 회원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품목으로서 공중망에 직·간접으로 접속되는 유·무선기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들 기기는 각 회원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파적합성(EMC) 및 전기안전에 관한 분야도 시험항목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시험기관의 운영사항과 관련된 제도는 국제기준인 ISO/IEC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MRA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시험기관 관련제도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기준(ISO/IEC Guide 25, 58 등)을 준수하는 시험기관 관련제도를 새로이 제정하고 있으며, ’99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 EU와 각국의 추진현황

EU는 ’92년 9월 상호인정협정 예비회담국으로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캐나다, 뉴

질랜드 등 10개국을 선정하여 이중 6개국과 1차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이와는 별도로 스위스, 터키 및 중동구 국가들과는 경제통합 차원에서 표준의 조화 및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통일된 단일마크로서 CE마크를 제정하고 안전, 건강, 환경 등에 관련된 제품에는 CE마크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CE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EU역내에서 제품을 출하·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CE마크는 유럽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상품에 대한 비자라고 할 수 있다.

EU와 각국별 MRA체결 추진현황을 보면, 미국과는 ’94년 협상개시 이후 3년 2개월만에 ’97년 6월 13일 통신단말기기, 전자기적합성(EMC), 전기용품안전 등 6개분야의 MRA를 가서명하고, 이후 ’98년 5월 18일 런던에서 양측의 정상회담시 MRA에 서명하였다. 각 분야별로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승인서 상호인정을 위한 이행기간을 18개월 내지 36개월 두기로 하였다.

호주 및 뉴질랜드와는 ’96년 7월 19일에 통신단말기기, 전기용품안전, EMC 등 8개분야(뉴질랜드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는 제외됨)에 대한 MRA에 가서명 후 ’98년 6월 18일 MRA를 체결하고, 각 분야별 시험성적서, 인증서 및 마크를 상호인정하기로 하였다.

캐나다와는 ’97년 6월 10일에 통신단말기, EMC, 전기용품안전, 의료기기 등 6개분야에서 MRA에 가서명하였고, ’98년 5월 14일에 양측 정상회담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일본과는 ’94년 11월부터 MRA협상을 진행하여, 통신기기, 전기전자, 화학품, 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기본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한·EU간에는 MRA체결을 위한 협상이 통신기기, 전기기계, 기계류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협상개시 시기는 EU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EU 양측은 MRA체결전 양측의 인증제도를 상호이해하기 위하여 '98년 3월에는 서울에서 EU측의 제도 설명이 있었으며 '98년 7월에는 브뤼셀에서 우리나라의 제도 설명회를 개최 한 바 있다.

3. 기타

양자간 협상으로 우리나라와 캐나다 사이에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MRA가 이미 '97년 1월 10일에 체결되어 상대국의 제도에 의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갖기 위하여 18개월간 신뢰구축기간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업체에서는 캐나다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에 기기 시험을 받기 위하여 캐나다에 직접가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신기기분야의 지정시험기관중 산업기술시험원이 캐나다로 부터 유선기기분야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캐나다의 KTL Ottawa Inc.가 우리나라로 부터 유·무선, EMC 분야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업체에서 캐나다로 통신기기를 수출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캐나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시험 받고, 그 시험결과를 캐나다의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APEC TEL MRA진행상황과 병행하여 기존의 협정을 APEC MRA로 대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일간에는 통신기기, 기계류,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양국의 인증제도를 상호이해

하기 위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99년 7월초에는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일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99년 9월 말경에는 서울에서 일본측으로부터 일본의 인증제도를 소개받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V. MRA가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첫째, 약정체결국간의 이중적인 시험평가 절차를 방지하여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의 절감 및 불확실성 제거로 수출 활성화 가능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보통신기기 수출업체의 경우, 시험평가를 받기위한 제반 비용감소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CDMA 단말기 등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관련 규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제3국의 기술규격 및 시험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나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에 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시험검사, 인증분야의 기술수준향상 시험평가관련 기관, 절차, 기준 등의 국제기준 부합화 노력으로 관련 기술의 능력 및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 등 APEC내의 선진국 및 EU에서는 통신기기 분야에서 제조자/공급자 자기선언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인증분야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표준, 인증 등에 대한 통상압력 완화 형식승인 관련 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시험 평가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으로 표준, 인증 등의 기술장벽에 대한 통상압력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VII.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첫째, MRA 관련 제도개선반 구성·운영
정보통신부는 APEC 및 EU와의 MRA에 적극 대응하고 형식승인 관련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 및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MRA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MRA대책반을 통해 관련업체가 APEC 및 EU회원국과의 수출입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응책을 세워가는 한편, 유·무선기기의 인증제도 및 관련 지정시험기관제도 그리고 사후관리제도 등 전반적인 사항에 걸쳐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둘째, 정보통신기기 관련 시험기관제도의 국제수준으로 향상 추진

먼저, APEC 및 EU등과의 MRA에 참가하기 위해 유선·무선기기 및 전자파적합등록기기 관련 지정시험기관제도는 ISO/IEC 가이드를 준수하여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현재의 세분야로 나뉘어진 지정시험기관 관련 규칙을 하나의 규칙(“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기기의 지정시험기관 관련제도는 유·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EMC)의 3개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이를 지정, 관리하는 제도도 각각의 법령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어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애로가 발생하였다.

새로이 제정된 지정시험기관 관련제도는 '99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 갔으며 이 규칙에 의해 지정받는 시험기관만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시험기관으로 인정되어 외국과의 상호인정서 수립국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세째, 인증과 관련된 절차 등의 개선을 통한 MRA 대비

지정시험기관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유선기기분야의 형식승인, 무선기기분야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그리고 적자파적합등록분야의 인증과 관련된 절차 등을 일원화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 강화 추진

정보통신기기 관련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업체에 부담을 주는 사전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반면 국제적으로 강화추세에 있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규정도 아울러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VIII. 맺음말

APEC 뿐만아니라 EU회원국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활발하게 정보통신기기 MRA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정보통신 관련업체들의 수출을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 MRA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업계 공동으로 MRA에 적극 대응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업체들의 MRA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 및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